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31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3114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가단1021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천하람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삼식, 김민석

변론 종결 2019. 5. 1.

판결 선고 2019. 5. 15.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가단1021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D 전 89㎡ 중 49/8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798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7쪽 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8) E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광주시 G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으나 2008. 2. 21.경 그 신청이 반려되자 2008. 7.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방향 49㎡에 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와 같이 E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합병을 시도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등기가 가능한 최소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여 면적을 증대시킨 후 분할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결국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E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합병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제6쪽 8행의 "피고 E"을 "E"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양철한

판사김유진

판사권순엽